

차드 (Chad)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	-
보험료율 (근로자 / 사용자)	8.5% (3.5% / 5%)	8.5% (3.5% / 5%)	-
노령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80개월, 60세	퇴직연령 도달 전 10년 간 가입기간 60개월 이상 또는 총 가입기간 180개월, 60세	가입기간 요건 추가 (퇴직연령 도달 전 10년 간 가입기간 60개월 이상)
노령연금 지급률 (40년)	60%	60%	-
일시금	최종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 x 가입연수	최종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 x 가입연수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및 현행법 : 1977년(연금), 1978년(노령, 장애, 유족), 2007(퇴직연령), 2009(보험료)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민간부문 및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 포함하여 노동법에 의해 가입된 임금근로자
- 적용제외 : 자영자, 치안 판사, 군인
- 특별제도 : 공무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총 소득의 3.5%.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 소득은 500,000 CFA francs
- 자영자 : 해당 없음
- 사용자 : 임금 총액의 5%.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 소득은 500,000 CFA francs
- 정 부 : 없음;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로 보험료 납부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 10년 간 6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거나, 총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60세(조로증이 있는 경우 55세) 도달자
 - 조기연금 :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 10년 간 6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거나, 총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55세 도달자
 -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
 - 노령청산금 :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0세 도달자

- 장애연금
 - 장애연금
 - 소득활동능력이 66.7% 이상 상실했다고 판정되어야 하며 최소 5년 간 기금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 발생 직전연도에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
 - 장애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 요건 없음
 - 상시간병수당 :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상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사망자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 또는 장애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중인 40세 이상 미망인. 혼인기간 1년 이상인 장애를 가진 피부양 홀아비. 15세 미만 자녀(견습생인 경우 18세,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경우 21세)
 - 배우자의 연금은 재혼 시 정지됨
 - 재혼청산금 : 배우자 재혼 시 지급
 - 유족청산금
 -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사망자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 또는 장애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 중인 40세 이상 미망인. 15세 미만 자녀(견습생인 경우 18세,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경우 21세)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최종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둘 중 큰 금액)의 30%에 180개월 초과한 가입기간 12개월 당 월 평균소득의 1.2%씩 가산하여 지급

- 가입자가 조로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은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수령한 1년 당 5%씩 감액되어 지급. 정상퇴직연령에 가입자에게 완전노령연금액 지급
- 가입자가 조로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은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청구한 1년 당 5%씩 감액되어 지급.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가입자에게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짐
- 월 최저연금액은 국가 월 최저임금(59,995 CFA francs)의 60%
- 월 최대연금액은 최종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둘 중 더 큰 금액)의 80%
- 조기연금 : 연금은 정상퇴직연령 전 일찍 청구한 1년 당 5%씩 영구적으로 감액됨
- 급여는 분기마다 지급됨
- 급여조정 : 급여는 제도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생계비 및 법정최저임금 변동을 근거로 시행령에 의해 조정됨

- 노령청산금

- 가입기간 1년 당 최종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둘 중 큰 금액)의 1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

- 최종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둘 중 큰 금액)의 30%에 180개월 초과한 가입기간 12개월 당 월 평균소득의 1.2%씩 가산하여 지급
-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청구된 시점부터 정상퇴직연령까지의 1년 당 1년으로 가입기간 인정됨
-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은 정지되며 동일한 금액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59,995 CFA francs)의 60%
- 월 최대연금액은 최종 3년 또는 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80%임
- 상시간호수당 : 연금액의 50% 지급
- 급여는 분기마다 지급됨
- 급여는 제도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생계비 및 법정최저임금 변동을 근거로 시행령에 의해 조정됨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 사망자가 수령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 지급
- 수급 가능한 미망인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연금은 균분 지급됨
- 재혼청산금 : 배우자연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고아연금

- 사망자가 수령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를 각 고아에게 지급. 완전고아인 경우 각 완전고아에게 40% 지급
- 최대 유족급여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령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여는 분기마다 지급됨
- 급여는 제도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생계비 및 법정최저임금 변동을 근거로 시행령에 의해 조정됨

- 유족청산금 : 가입기간 1년 당 최종 3년 또는 5년 동안 사망자의 월 평균 소득의 1개월분 일시금을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공공고용사회소통부(Ministry of Public Affairs, Employment and Social Dialogue)
 - 전반적 감독
- 국가사회보험기금(National Social Insurance Fund)
 - 제도 운영 및 징수 관리
 - <https://cnpstchad.com>

<2019년 ISSA 자료>